

제20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 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(2015.4.10)

# 조례안 검토 보고서



**총무위원회**

[전문위원 박완묵]

# — 목 차 —

의안번호	건 명	페이지
2015 ~ 19	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1

##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### 일부개정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5. 3. 31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5. 4. 01.

## 2. 개정이유

-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이 (2015.1.6.시행) 개정되어 조례의 기준이 되는 사항인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위원의 범위에 진주보훈지청장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함(안 제3조제2항)
  - 진주보훈지청장
- 나. 「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맞춰 용어를 순화함(안 제3조제2항)
  - 자 ⇒ 사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-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,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제8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의 개정은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,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이 (2015.1.6시행)개정되어 개정된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과 같이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위원의 범위를 개정함은 타당하며
- 「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맞춰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용어를 순화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## 6. 참고자료

### 관련법령 발췌

#### □ 「통합방위법」

[시행 2014.11.19.] [법률 제12844호, 2014.11.19., 타법개정]

- 제5조(지역 통합방위협의회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소속으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시·도 협의회"라 한다)를 두고, 그 의장은 시·도지사가 된다.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으로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, 그 의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- ③ 시·도 협의회와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지역협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·도 협의회에 한한다.
1.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(이하 "취약지역"이라 한다)의 선정 또는 해제
  2. 통합방위 대비책
  3.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
  4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 대책
  5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 대책
-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09.5.21.]

#### □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

[시행 2015.1.6.] [대통령령 제25964호, 2015.1.6., 일부개정]

- 제8조(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) ① 시·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지역협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3.8.20., 2014.11.19., 2015.1.6.>
1.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
  2.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
  3. 국가정보원의 관계자
  4. 지방검찰청의 검사장·지청장 또는 검사
  5.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
  6.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
  7.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

## 8.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

9. 지방병무관서의 장

10. 교육감 또는 교육장

11. 지방의회 의장

12. 지방소방관서의 장

13. 지역 재향군인회장

14.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

② 지역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,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.

③ 지역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(이하 "지역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지역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

2.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

3.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

④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

⑤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,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⑥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,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

2. 향토예비군,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, 계몽 및 지원 대책

3. 취약지역 대비책

4.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

⑦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

2. 통합방위작전·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·관·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